
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9.

발 의 자 : 강선영 · 강대식 · 서명옥
최수진 · 김용태 · 임종득
최은석 · 구자근 · 유용원
이달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「국가공무원법」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, 군무원은 「국군조직법」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과 상이하어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특히 강등 및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현행 방식은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군인의 징계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가혹하며, 군인에게 부과되는 ‘근신(謹慎)’과 같은 군 조직 특유의 징계 문법이 결여되어 있음.

이에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「군인사법」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,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

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제2항, 제3항 및 제6항).
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,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.
- ③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,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.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(減額)한다.
- ⑥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이 법 시행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개정규정이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,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.</u></p> <p>③ <u>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.</u>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 <p>⑥ <u>강등(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),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.</u></p> <p>⑦ · ⑧ (생 략)</p>	<p>제39조(징계의 종류와 효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③ <u>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,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. 정직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(減額)한다.</u>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.</u></p> <p>⑦ · ⑧ (현행과 같음)</p>